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1. 제정이유

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·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, 해촉 규정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라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, 운영, 수당 등에 관한 규정
(안 제8조 ~ 안 제11조)
- 마.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, 위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 - 2) 입법예고 : 2015. 3. ~ 2015. 4.
 - 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, 시행 및 분석·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
2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,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

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어느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, 성별, 연령별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촉)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해촉)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%미만인 경우

3.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

4.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
2.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

3. 본인 질병과 사고
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
5.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,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)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, 문화탐방·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·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외 추가 비용발생 사항 없음

4. 작성자

- 어르신청소년과 행정6급 안기민(☎02-330-1285)

관계 법령

□ 청소년기본법 [시행 2015.1.1.] [법률 제12856호, 2014.12.23., 타법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 ~ 8. (생략)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